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6-329호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공무직근로자 심사원(임상통계) 채용공고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통계심사반(사전상담과)에서 근무할 심사원(임상통계 분야)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9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인원 : 총 1명

분 야	부 서	직종 및 등급	인 원
의료제품	사전상담과	통계심사원 나급	1명
합 계			1명

나. 담당업무

- 의료제품 임상시험에서의 통계적 고려 사항에 대한 사전상담 업무
- 의료제품 임상통계 분야 사전상담 운영 업무 지원

다. 자격요건

구분		채용 인원	근무 지역	자격요건
분야	등급			
의료제품	통계 심사원 나급	1명	충북 오송 (평가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임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관련 분야]** ○ 통계학, 임상통계학, 의학통계학, 생물통계학 등 유사 분야

라.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인증시험 합격자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보수 및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나.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 '26.12.31.까지(회계연도 기준)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

마. 보수수준(연봉)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26년 기준)
통계심사원	나급	52,700

* 급식비(매월 16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 상여금 별도(6개월 이상 근무자)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기타

-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등 유연근무 활용 가능
- 셔틀버스 운행 (청주, 오송역, 조치원역, 세종↔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KTX, SRT 이용 수도권 출·퇴근 가능)

3.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

가.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석·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성적증명서(대학이상 최종학력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붙임] 기타첨부자료로 제출**
선택서류 (해당자 제출)	-어학성적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운전면허 제외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여부,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 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 이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 학력·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 **면접시험 주의사항**

- 면접시험 시작시간 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나.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6. 9.23.(수) 18:00 ~ '26.10. 8.(목) 23:00**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분야 및 응시 등급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6.10.13.(화)	-	개별(유선,문자)통보 및 우수인재채용시스템 게시
면접시험	**'26.10.22.(목, 예정)**	별도 통보	-
최종발표	'26.10.29.(목, 예정)	-	개별(유선,문자)통보 및 우수인재채용시스템 게시
근무시작일	'26.11월 중	-	조정 가능

* 접수 현황에 따른 연장 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
* 상기일정은(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발표) 공고 일정 등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기타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작일에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를 명시적으로 통보한 경우
- **신원조회 · 조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한 경우**
-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 043-719-2917)

6.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제출,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흰색바탕 사진파일 제출(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기타 첨부 자료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17조제1항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제24조제2항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24조제1항 관련)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4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